

---

- 제389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

# 주요 현안 보고

---

(현안1)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 결과

(현안2)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비 부담 업무협약 체결 계획(비공개)

경 기 도  
[철도항만물류국]



# 1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

## □ 업무협약 개요

- 일시/장소 : '26. 3. 6.(금) 10:30 / 안산시청
- 협 약 명 : 경기도·안산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추진 업무협약
- 협약기관 : 국토교통부, 경기도, 안산시 및 협의체 관계기관
  - 참석자 : 국토부 2차관, 道 행정2부지사, 안산시장, 5개 협의체\* 관계자
  - \*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NH,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 협약내용 :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추진 관련 상호 협력체계 구축

### 기본계획 용역 개요

기본계획 용역 개요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안산선 철도지하화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 발주기관 : 경기도 & 안산시	- 발주기관 : 국토교통부
- 용역비 : 1,620백만원(道 50%, 市 50%)	- 용역비 : 916백만원
- 용역사 : (주)동명기술공단 컨소시엄	- 용역사 : (주)서현 컨소시엄
- 과업기간 : '26. 1. 23. ~ '28. 1. 22.	- 과업기간 : '25. 12. 12. ~ '27. 12. 1.
- 과업내용 : 철도부지 통합개발 기본계획	- 과업내용 : 지하화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 □ 협약 주요내용 ※ 협약서 붙임 참고

- 제도개선, 신속한 행정절차, 전문성 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협약서 제2조)
- 정례적인 협의체 구성·운영(협약서 제3조)
  - 참여기관 간 정보 공유, 쟁점·이견에 대한 검토·논의 등(분기별 1회 개최)

## □ 향후계획

- 내실있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유기적 협의체 운영
  - (월별) 상부개발 실무협의회 운영(道 및 안산시 관계부서·기관, 용역사 등)
  - (분기별) 상부·하부 통합 협의체 운영(道·국토부·市·5개 관계기관 등)

철도항만물류국장 추대운 8030-4800	철도정책과장 고태호 8030-4810	일반철도팀장 전성학 8030-4831
---------------------------	-------------------------	-------------------------

## 경기도·안산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추진 업무협약서

국토교통부, 경기도, 안산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이하 '각 기관')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추진에 있어 상호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경기도·안산시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이하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각 기관이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약기관 간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각 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호 협력에 있어 호혜 및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다음과 같이 적극 협력한다.

1.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안산시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한다.
2.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경기도·안산시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한 행정절차를 지원한다.
4.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기관이 가진 전문성을 활용하여 적극 지원한다.

5. 각 기관은 철도시설과 다른 대중교통수단 간 효율적인 연계·환승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지원한다.
6. 각 기관은 상호 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교환하고 공유한다.
7. 각 기관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위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

**제3조(협의체 구성·운영)** 본 협약의 원활한 이행과 상호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례적인 협의체를 구축·운영한다.

**제4조(협의 조정)**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협약서의 개정 또는 해석에 있어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각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비밀 유지)** 각 기관은 상호 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와 자료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대외 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조(효력 발생 및 기간)** 본 협약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 협약의 종료를 요청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제7조(기타)** 각 기관은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8부를 작성하여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3월 6일



국토교통부

제 2 차 관

홍 지 선

홍지선



행정2부지사

김 대 순

김대순



안산시

시 장

이 민 근

이민근



국가철도공단

철도지하화추진단장

박 정 일

박정일



시설계획처장

전 일 식

전일식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균형계획처장

주 민 곤

주민곤



KRIHS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

박 세 훈

박세훈



한국교통연구원  
KOREA TRANSPORT INSTITUTE

철도교통연구본부장

이 호

이호